

大法院判例를 통해 본 工業所有權制度의 紙上分析

- …… 工業所有權制度의 紛爭은 어떠한 過程을 거쳐 解決되는가? 모든 紛爭……○
- ……이 그렇듯이 工業所有權制度도 大法院에서 解決되는 것이 대부분이다. ……○
- …… 다만 地方法院 대신 審判所, 高等法院 대신 抗告審判所를 거쳐 大法院에……○
- …… 上告되는 것이 다를 뿐이다. ……○
- …… 그러면 어떤 紛爭들이 大法院까지 上告되어 어떻게 解決되었는가? 이에……○
- …… 本誌는 「判例研究」를 위하여 工業所有權 4法의 代表의인 大法院 判例를……○
- …… 모아 分析해 보았다. ……○ <編 輯 者 註> ……○

◎ 第 19 回

<前號에서 계속>

著名商標

區分 事件 日字	請求趣旨	名稱	審決 判決	適用法條文 (審決·判決理由)
73審判 136 (73. 6. 7)	商標登録 第28005號兒童服 는 無效가 내 服 洋 服	第45類 (73. 11. 2)	成 立	舊商標法 第5條 1項 8號(著名한 상표와 類似하여 無效다)
73抗告(당) 375 (73. 12. 3)	無效가 아니다		不 成 立 (73. 11. 8)	原審維持
74후 67 (74. 12. 11)	無效가 아니다		棄 却 (76. 2. 24)	原審維持 (無效)

原審決에 適示된 美國의 雜誌와 新聞에 각 掲載되어
우리 나라도 들어와 있었고 世界最大의 石油會社의
상표인 事實을 認定한 後 本件 商標과 引用商標와 同
一하다고 할 程度로 類似하니 本件商標을 使用하면 一般
需要者는 마치 引用商標權者가 그 商品을 生產한 것
같이 誤認混同할 憂慮가 있다는趣旨로 判斷하여 本件
商標는 舊商標法 第5條 1項 8號에 該當하므로 同法 24
條의 規程에 依하여 그 登錄을 無效로 하여야 할 것인
다는趣旨로 判斷하고 있는 바 原審이 위 認定事實과
判斷을 記錄에 나타난 證據資料에 對比하여 檢討하니
本件商標는 引用商標와 同種商品에 使用하는 것도 아
니고 本件商標가 먼저 登錄된 商標라 하더라도 위 原
審의 判斷대로 舊商標法 第5條 1項 8號에 該當한다 할
것이니 原審의 措置는 適法하여 所論商品 類別主義와
先原主義 等에 關한 法令에 違背됨이 없다.

引用商標가 우리 나라를 위시한 全世界的으로 著名
한 商標로 認定한 原審의 措置는 適法하다.

本願商標 :

EXON

(登録 28005號)

引用商標 :

EXXON

(登録
號)

● 判決內容

原審이 그 쳐시한 證據資料에 의하여 本件 商標의
出願前에 審判請求人の 商標(引用商標)에 關한記事가

區分 事件番號	判決(審決)日 (結果)	名 称	適用法條文 (類型別)
80후 1	80. 3. 11 (棄 却)	(第11類) 月經帶, 月 經帶用綿具	商標法 第9條 第1項 第8號 및 11號
78抗告(절) 470 (77-5039)	79. 11. 30 (不成立)		(稱號, 外觀, 觀念類似 商 品의 誤認混 同)

本願商標：

오비이
o b e

(出願 77-5039)

引用商標：

“OB”

本件商標：

AMORE
아모레

(登録 36098)

(가)號商標：

Amorex
아모렉스

● 判決內容

本件兩商標를 對比하여 呼稱上 本願商標는 3音節, 引用商標는 2音節의 差異는 있으나 第1音과 第2音節이 同一하니 前者(本願商標)의 第3音인 “이”는 第2音을 길게 발음할 때 通例의 으로 나오는 음이므로 양자는 “이”가 있고 없음에 따라 확연히 識別될 수 없다고 하였으며, 양자는 指定商品이 다르므로 商品出處의 誤認混同 意慮의 與否에 對하여는 引用商標(後者)가 國內著名商標로 認定되는 것이 來社會의 通念上妥當하다고 한 後 그려므로 指定商品이 비록 다르다 하여도 現代企業이 여려가지商品을 生產하는 事態에 있어서는 一般需要者는 마치 引用商標權者가 그商品을 生產한 것 같이 認識할 것이므로 誤認混同을 면할 수 없다고 하였고, 또 商標使用에 關한 당사자 사이의 合意覺書에 對하여 이는 당사자 内部問題이지 이로써 商標法第9條 第1項 第10號의 適用을 排除할 수 없다고 判示한 原審決의 위와 같은 判斷은 正當하고 거기에 審理未盡·理由不備·判斷遺脫의 위법이 없다.

同一類似

區分	判決(審決)日 (結 果)	名 稱	適用法條文 (類型別)
事件番號			
78-10	78. 9. 12 (棄却)		舊商標法 第5條 第1項 第11號
76抗告(당)	78. 5. 31	(第10類)	舊商標法 第25條 第1項)
413	(不成立)	화학 의학	
75審判 471	76. 9. 30 (成 立)	및 약제의 조제품	(他人의 登錄 상표와 동일 유사한 유사 상표의 判斷)
登 錄	가호는 本 件 商標의 權利範圍에 屬한다.		
第36098에 대한 權利 範圍			

● 判決內容

第1點에 대하여

原審은 이 事件 登錄商標와 (가)號와 外觀을 대비하

면서 (가)號는 “AmoreX” “아모렉스” 또는 “Amorex”와 “아모렉스”가 결합된 상태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原審決에 의하여 明白한바 (가)號의 일부만을 족출하여 (가)호라고 단정하여 이것이 이 사건 登錄商標의 外觀이 類似하다고 설시한趣旨가 아니니 原審決에는 審理未盡 採證法則違背·其他 허물이 없다.

第2點에 대하여

原審은 이 事件 登錄商標와 (가)號 標章은 細密하게 節次를 가지고 觀察할 때는 서로 相異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經驗則上 明白한 것처럼 일군의 文字를 全體로서 觀察하면 그 直觀的 인상이 지극히 근사하다는趣旨로 설시하고 있다. 이러한 判斷은 正當하다.

第3點에 대하여

設使 이 事件 第1審 審決中에 論旨가 指摘하는 대목에 關한 허물이 있어서 審判請求인이 그是正을 호소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原審審決에 의하면 이點을 바로 잡아서 (가)號 原狀態에서 이 事件 登錄商標와 比較하고 있으므로 實質적으로 審判請求人の 主張을 받아들여 審判한 셈이 되는 것이므로 이 論旨도理由없다.

第4點에 대하여

原審審決이 그 判示에서 (가)號 標章을 “AmoreX”와 “아모렉스”가 結合된 狀態가 그 일부임을前提로 한趣旨는 分明하지 않으나 辯論의 全趣旨에 비추어 볼 때 Amorex 라고 結合된 것을前提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不特定한 狀態의 (가)號를 審判對象으로 한 위법이나 請求趣旨에 벗어난範圍에까지 들어가서 審理한 위법이 없다.

第5點에 대하여

原審이 「“Santa”와 “Fanta”는……外觀上 類似하다는 大法院 74-41 判示와 같이……」라고 記載한 것은 오기임이 분명하고 이러한 오기가 있다하여 이것이 原審審決에 影響미칠 바 못된다.

그러므로 이 上告는 理由없는 것이 되므로 棄却한다.

〈계속〉